

1. 개정이유

건설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·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조달 시스템등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을 제한하고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한 임금의 대리수령을 제한하고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(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)
- 나. 고용인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로만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7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,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8항,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
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별로 명시하고,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2. 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건설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지급(제10조 제3항에 따라 일반계좌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를 등록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거나”를 “건설근로자에게”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다른 사람의 일반계좌”를 “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”로,

“동의 밋”을 “현금수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공사대금의 청구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공사대금의 청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대상 건설근로자별로 명시하고,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<u>2. 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.</u>
제12조(공사대금의 지급) ① ~ ④ (생략)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	제12조(공사대금의 지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

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
을 원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
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가
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
지급(제10조제3항에 따라 일반
계좌를 등록할 때 다른 사람의
일반계좌를 등록하여 지급하는
경우를 말한다)하거나 직접 현
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5
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
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의
임금 내역에 다른 사람의 일반
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
그 사유를 명시하고, 건설근로
자 본인의 동의 및 확인서를 제
출받아야 한다.

⑦ · ⑧ (생 략)

----- 건설근로자에
게 -----

-----.

⑥ -----

----- 건설근로자에게 직
접 현금으-----

----- 현금수령 -----
-----.

⑦ · ⑧ (현행과 같음)